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8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6년7월27일(월)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상정된 안건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3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3

(14시10분 개의)

○소위원장 김승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법안1소위에 선임되신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처음 출석하셨는데요 간단히 위원님들 인사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하여튼 제대로 잘해 보십시오. 서로 여야 간에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진짜 정치 같은 그런 정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다음, 광규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택 위원 우리 법사위 전체회의도 그렇고 소위 위원님들도 김 씨 성이 굉장히 많으시네. 정말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법률가 출신이시고 하니까 제대로 된 입법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감사합니다. 정말 김 씨와 박 씨가 많습니다.

다음은 김태규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반갑습니다. 김태규입니다.

아, 정신없네요. 지난주 말에 상임위 정해졌는데 주말에 연락 오고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전체회의 들어가서, 전체회의도 법사위뿐만 아니고 운영위원회까지 같이 해서 지금 내가 정상적으로 회의 쫓아가고 있나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개 회의가 정상적으로 되려면 사전에 유인물도 좀 보고 전후 상황도 파악하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딱 그냥 병풍된 느낌, 이래 가지고 무슨 회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배식 판사 할 때 딱 제 경험을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거든요, 그날은 제 판장이 알아서 하니까. 딱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장식품으로 들어온 느낌이라서 야당이…… 모르겠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은 지금 상황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런데 적어도 약간의 배려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준비를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휘몰아치기로 가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걸 노리신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제발 그건 아니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여유를 주시면 좀 더 제대로 준비를 해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법사위에 오시면 의원실에 간이침대는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김밥으로 식사를 때울 때가 많다고 각오를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해지실 것 같고. 이 특검법은 저희들도, 법안은 오늘 자료를 받고 사전 검토를 했지만 저희도 처음인데요 여야 합의로 7월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라 저희가 부득이 오늘 잡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관위 특검법안은 앞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5)

2.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27)
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146)
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14시14분)

○소위원장 김승원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중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항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3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4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기도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입니다.

법안심사자료, 의사일정 제1항~제4항까지 자료입니다.

목차와 1쪽의 심사 대상 법률안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자료 2쪽입니다.

‘2. 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입니다.

이 부분에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비교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조문대비표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수사대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수사대상은 7월 20일 교섭단체 간 합의로, 여야 간 합의로 정하기로 일단 결정하였고요.

수사대상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청와대 등 정부기관 관련 의혹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선관위 전반적인 운영 관련 사건 그리고 개별 특검법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쪽의 제일 왼쪽에 김은혜 의원안 2항, 3항을 보시면 ‘청와대 및 정부기관의 관리 소홀 및 책임 회피 문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든가, 3항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기관 관련 의혹 사건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안 4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든가.

3쪽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한병도 의원안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8항 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과 같은 것들을

선관위 운영 전반적인 관련 사건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입니다. 4쪽과 5쪽은 일반적인 개별 특검법에서 고소·고발 사건이나 인지 사건 같은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조문대비표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검사임명’ 절차입니다.

특별검사임명은 아시는 것처럼 역시 교섭단체 간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합의 하였고요. 그리고 국민추천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합의하신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정안들과 관련해서 논의하실 내용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요청 또는 의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비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 후보자 중에 연장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간주 규정을 둘 것인지 등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격’은 네 제정안이 다 동일한 내용이고요. ‘결격사유’도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일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그리고 수사 협조 및 지원 관련 내용인데 역시 특별검사보나 특별수사관도 수사대상이 결정되면 그 범위에 맞춰서 적정 수준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사 기간 관련해서는 1차적인 기본적인 수사 기간을 며칠로 할 것인지 그리고 1차 연장과 2차 연장 기간과 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제일 아래쪽의 재판 기간과 사전 처리 보고는 네 제정안 모두 일반적인 개별 특검법 입법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조문별 검토 다음에 주요 내용 검토의견이 정리돼 있지만 비교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문대비표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10쪽 ‘제명’입니다.

‘제명’은 아까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섭단체 간에 내용이 합의돼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네 제정안이 모두 동일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내용과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대상’입니다. 아까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수사대상은 10쪽에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 관련 의혹 사건’ 그리고 13쪽에 ‘청와대 등 정부기관 관련 의혹 사건’ 등이 있고 그리고 13쪽 아래 쪽에 ‘선관위 운영관련’ 전반적인 의혹 사건이 있어서 수사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내용들을 토대로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제일 위쪽의 백혜련 의원안에서 범인도피, 은닉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은 내란 특검법과 좀 유사한데 이 내용까지 포함하실 건지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호·6호, 고소·고발 사건이라든가 인지 사건은 개별 특검법에서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그 대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만 유상범 의원안에서 제일 아래쪽의 11호 관련된 경우는 ‘인지된 사건으로서 1호부터 7호까지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선거 부정 의혹 사건’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사건도 포함할지 여부도 역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먼저 위쪽의 이해충돌금지 규정은 일반적인 개별 특검법 입법례에 있는 내용인데 다만 유상범 의원안에서는 이해충돌금지 대상으로 공직자 외에 관계자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이해충돌금지 규정은 공무 수행이 전제가 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공직자 이외의 다른 관계자까지 규정하는 게 적절한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아래쪽 ‘관련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개별 특검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유상범 의원안 1호하고 한병도 의원안 1호에서 범인도피죄와 허위감정통역죄가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종합특검법 7월 개정에서 범인도피죄와 허위감정통역죄가 둘 다 개정되면서 포함되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에서 각 3호가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단 한병도 의원안의 3호가 가장 최근의 입법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나.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관련 사항입니다.

아까 개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추천하기로 원내 교섭단체 간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추가 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는 일반적인 입법례가 있기는 하지만 다만 한병도 의원안 2호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제외한다’고 해서 특별검사법에 따라서 임명된 특별검사가 특별검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되고 있는데, 임명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는 입법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특별검사 등(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의 권한 및 의무 등입니다.

일반적인 특검법 입법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3항 부분에서 자료의 제출, 수사 협조 요청 대상 기관이 약간 상이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어 있고 유상범 의원안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그리고 유상범 의원안에서는 추가해서 자료 제출 내용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인지도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입니다. 백혜련 의원안의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유상범 의원안 4항에서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 법에도 불구하고 자료의 열람이라든가 사본 제작, 전자정보 복제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 특검법에서는 입법례가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누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지가 약간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고려해서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법률안의 4항이라든가 5항, 아래쪽은 파견 공무원의 수 및 기관인데 그 부분도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은 파견 공무원 규정에 더해서 공수처에서 2명 파견을 필수적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에서 특별검사는 인쇄업체, 운송업체 등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 특검법 입법례에는 없는 내용이고 민간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한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은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더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사건에 대한 이첩 규정만 두고 있고 수사에 관한 이첩 규정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7쪽, 특별검사는 이첩받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수사기간 만료 후 국가수사본부에 우선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과 약간 충돌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파편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역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적정한 수를 논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특검법 입법례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8조(특별검사등의 의무)도 기존 특검법 입법례랑 동일합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먼저 수사기간입니다.

수사기간은 1차 수사기간과 1차 연장기간 그리고 2차 연장기간 그리고 연장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특검법 체계에 따라서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판기간은 모든 법률안 대부분 기존 특검법 체계의 입법례랑 동일한 내용이고 다만 55쪽의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기밀 등을 포함한 재판 내용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규정 그리고 관계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중계와 관련하여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종합특검법에 있는 입법례로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6쪽입니다.

사건의 처리보고하고 사건의 대국민보고도 기존 입법례랑 동일해서 그대로 가서도 무방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수 등에 관한 내용도 기존 입법례와 큰 차이가 없어서 동일하게 가서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61쪽, 퇴직 등에 관한 사항도 기존 입법례랑 유사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62쪽, 해임 등도 마찬가지로 기존 입법례와 동일하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3쪽의 김은혜 의원안의 신분보장과 관련해서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에 대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심판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추가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회계보고에서 김은혜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의 내용은 동일한데 유상범 의원안에서는 모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더 넓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둘 것인지 정도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입니다.

재판권 및 재판관할은 유상범 의원안 및 한병도 의원안과 같이 기존 입법례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고 이의신청은 모든 법안이 동일해서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69쪽의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입니다.

김은혜 의원안의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입니다. 김은혜 의원안에서는 이 법의 범죄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해당 사건과 인력을 인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현재 규정에 상설특별검사가 없으므로 불필요한 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유상범 의원안의 다른 수사기관 등과의 관계입니다.

종합특검법, 그러니까 기존 입법례에서는 없는 규정이고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규정만 있어서 규정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71쪽의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라든가 벌칙은 기존 특검법 입법례와 동일한 내용이고, 72쪽의 벌칙 그리고 73쪽의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라든가 형벌 등의 감면도 역시 기존 특검법 입법례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74쪽입니다.

부칙은 시행일, 유효기간, 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그리고 75쪽의 공소시효의 정지는 역시 기존 입법례하고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5조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는 내란특검법에 유사 입법례가 있어서 이것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

다음, 마지막 한병도 의원안의 공소청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도 포함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전반적으로 법안 내용이 확정되면 체계·자구 정리 과정에서 별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간결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오늘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진수 법무부차관, 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기관 의견 듣겠습니다.

우선 법무부부터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 도입 여부와 기본적인 제도 설계는 사안의 성격, 국민적 의혹의 정도, 기존 수사기관을 통한 진상규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법률안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제8호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해당 문언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되는 행위와 범죄혐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김은혜 의원안 제2조 1항 제4호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 부패와 관련된 범죄 의혹 일체’라는 표현도 수사대상의 범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검 규모 및 수사기간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의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기간은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현재 여러 특별검사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다수의 검사가 파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검사 파견은 일선 검찰청 인력 운용과 민생사건 처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소청법 시행 이후에는 검사의 일반적 직무범위에서 직접수사가 제외됨에도 파견검사는 여전히 직접수사를 수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정안에서는 파견검사의 직무범위 및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파견검사가 행하는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파견검사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병도 의원안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중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특별검사 등의 직무·권한과 진행 중인 수사·공소제기, 유지의 효력 및 기존 파견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칙 제5조의 문언만으로는 검사의 권한·의무와 관련하여 어느 시점의 법률에 따라 행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월에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수사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

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나 영장청구 등 검사의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이 삭제·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특별검사·특별검사보의 경우 제정안에 따라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나 파견검사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어 파견검사가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등 수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파견검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제정안들은 특별검사에게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 권한 등을 부여하면서 자세한 사항들을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별검사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개정안의 검사 직접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 피의자신문에 대한 근거 규정의 삭제 부분,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 규정 폐지 부분 등도 준용하게 되어 특별검사의 권한 행사에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는 이 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사의 권한 의무와 수사·공소제기, 공소유지 절차 및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이 계속 적용되도록 명확하게 경과조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다른 사건으로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할 때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종종 특별검사들과 같은 권한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법무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정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일부 추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각 조문별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어디서부터, 하나씩 논의를 시작……

○소위원장 김승원 발언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제가……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놓고 토론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조문 순서대로 가면서 논의를 좀 줄여 나가고 쟁점 되는 것은 남겼다가 나중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그렇게 진행을 하든지……

○김용민 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지금 교섭단체 간 협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한계는 있지 않을까요?

○박형수 위원 그것은 지금 수사범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김용민 위원 다른 것들도 지금 많이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박형수 위원** 나머지는 크게 저게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여기서 정하면 거의 그대로 갈 확률이 높고 수사범위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논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그것은 지도부 협상 결과에 따르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검법 많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은 위원님들 관념 속에, 머릿속에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분리해서 한다면 가항 같은 경우에는 제목, 목적은 다 특징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원내 협의안이라 여기서 토론할 의미가 더 있는지 한번 살펴봐요……

그러면 일단 가항이 제일 중요하니까 10쪽에서 23쪽에 이르는 특검법의 제명, 목적,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대해서 먼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들 받아 보신 지 처음이거나 아니면 어제 잠깐 검토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나눠 주시면 전문위원이 법안 조문화할 때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게 용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가항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10쪽과 23쪽 사이에서 토론해 주실 분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대개 유상범 의원님 안과 한병도 의원님 안이 교섭단체 간 대표적인 법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예.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수사대상의 첫 번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그다음에 두 번째가 BH 등 기관의 범죄 의혹, 그것도 맞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예, 13쪽의 김은혜 의원안과 유상범 의원안이 선관위를 넘어서 청와대 등 정부 기관, 예를 들면 청와대, 정부 기관의 관리 소홀이라든가 시민 집회에 대한 국가폭력 사태 같은 것들도 수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서 대표적인 차이인데 가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유상범 의원님 안 몇 항이 그에 해당하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니까 13쪽의 8호가 제1호부터 7호까지의 사건 관련해서 공무원 또는 관계자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약간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호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3호와 8호?

○**전문위원 최기도** 예, 3호와 8호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청와대 등 정부 기관 의혹 사건.

그다음에 나머지가 선관위 전반적인 운영 관련……

○**전문위원 최기도** 예, 전반적인 운영 관련해서는 김은혜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유사한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마지막이 관련 사건인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관련 사건은 일반적인 개별 특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면 법무부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한병도 의원안 몇 호가 불명확하다고 그랬지요, 수사대상이?

○법무부차관 이진수 한병도 의원안 제2조 1항 8호에는 기관 운영과 관련된 범죄혐의 사건 및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으로 돼 있는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은 너무 범위가 넓고 앞에 열거된 내용들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 자료 13쪽에 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및 채용 비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운영과 비리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은 좀 불명확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고 하니까.

8호는 그렇고……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차관님께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마지막 정리하고 위원님께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심사 자료 14쪽 유상범 의원안 11호에 보면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되었거나’ 이런 표현도 구체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기존의 입법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후단도 ‘특검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서 1호부터 7호까지의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의 선거 부정의혹 사건’…… ‘유사한 방식’도 좀 애매한 표현이네요. 판단 주체도 누가 하는지 그것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불명확한 부분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쭙보는 건데요. 이런 입법례가 전혀 없었습니까? 방금 이렇게 불명확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리서치를 해 온 것은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한번 여쭙보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 많은 특검법들이 있었고 그 특검법들 중에 이런 포괄조항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조항이라서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의 입법은 최초로 나온 거고 이전에는 이렇게 입법된 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모두 다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개념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앞에 설치된 호들에 포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사안만 놓고, 이 예만 놓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 추상적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의 많은 입법들이 이루어진 과정 속에서 그러한 추상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해서만 그 구체성을 더 심도 있게, 더 과하게 요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전의 특검들하고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안만 보지 마시고 이전의 모든 특검법들을 놓고 그 특검법들이 전부 다 구체성이 확보돼 있었는지 그게 얘기돼야지,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해야지 합리성을 띠고 근거를 가지는 것이지 이것만 딱 놓고 보면서 포괄조항이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얘기해 버리면 이전의 특검법들하고 형평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다음에 소위가 따로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광규택 위원님.

○광규택 위원 지금 수사범위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안 같은 경우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밖에 언론보도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사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이 발의될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곧 예정될 상황이어서 거기서 어떤 것이 더 특검 수사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규정을 포함시킨 것 같고.

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지금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전산 조작도 있었다 이런 것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두 의원안은 초기에 그런 게 특정 안 됐을 때 향후에 드러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조금 부정확한 용어들을 사용했고 이제는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수사 대상으로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포함시켜 나가면 이 부분들이 정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확하니까 뺀다는 그런 것은, 정리를 하더라도 대신에 국정조사 과정이라든지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분들은 이 두 의원안에서 빠진 게 있으면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여야 원내수석 간에 이 수사범위를 놓고 협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결론을 조금 미루고 다른 부분을 먼저 하고 이 부분을 다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더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면……

○박형수 위원 저도 잠깐 한마디 할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광규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도부의 수사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기다려 보도록 하되 이 불명확한 부분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드러난 부분이 투표율 전산 조작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표율 전산 조작한 것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추후에 또 논의하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다음 논의는 목차에 보면 특별검사의 임명, 결격사유 및 정치적 중립, 특검의 권한과 의무, 수사기간·재판기간, 나·다·라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페이지부터 59페이지 사이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격사유, 정치적 중립은 다 대동소이하고 아까 전문위원 보고대로 심사자료 26쪽 1개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데요.

그다음에 국민추천도 다 여야 협의가 된 것이어서,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추천……

○전문위원 최기도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3인 3인 해서 6인?

○전문위원 최기도 예, 3인 3인씩입니다.

○곽규택 위원 제가 전문위원께 확인 좀 해 볼게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곽규택 위원 지금 여야 간 합의문상의 추천 방식은 합의가 됐는데, 그러면 이 법 시행된 다음에 언제까지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 또 추천 요청받은 이후로 그 두 단체에서 언제까지 추천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은 하게 돼 있는데 이 구성을 언제까지 할 것이며 또 교섭단체 간의 3인씩 추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은 합의문에 없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과거에 다른 기관의 추천을 받고 할 때 그때 날짜 같은 것은 조금 참조해서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된 조문을 소위 차원에서 마련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 합의문에 반영된 정신 그대로 하되 구체적인 날짜나 방식 같은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가다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설특검법에 후보추천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규정들을 참고해 가지고 법안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구체적으로 내용만 결정해 주시면 절차 같은 것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방식은 이미 합의가 된 거잖아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 위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아까 상설특검에 그 추천 절차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일단 전문위원이 안을 만들어 와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기존 특검법에도 그러한 범조항이 다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한변협도 이런 추천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행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을 하겠지만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마도 상설특검법의 예에 비추어보면 국회규칙으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국회규칙을 의결하고 본회의 의결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국회규칙을 준비하게 되면 이 법을 시행하는데 약간의 여유는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법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박형수 위원 그건 규칙으로 정하면 안 되지, 법에 올려야지.

○김용민 위원 아니, 그런데 저 얘기는 맞는 게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집 절차부터 시작해서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임시위원장은 누가 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법에 다 집어넣기는 그렇고 보통 국회규칙으로 해 왔거든요.

○곽규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상설특검법이니까 그런 거고……

○김용민 위원 상설특검도 그렇고 공수처장추천위원회도 그래서 국회규칙으로 다 위임을 해 놓았는데…… 그 비슷한 방식으로 해서 운영위에서, 이것은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하면 되니까 저는 시기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께서 법에다가 최대한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 보고 이것은 다른 예에 비추어봐서 법에 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다시 논의를 해 봅시다.

○김용민 위원 아니면 국회규칙을 한번 출력해서……

○전문위원 최기도 지금 상설특검법에 국회규칙이 한 12개 조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있으니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예, 그러면 상설특검법 조문하고 국회규칙 조문하고 같이 보여 주세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도 원내에서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회규칙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하면 분명하게 끝날 일로 보이긴 합니다.

다음은 33쪽, 새로 들어간 조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시지요.

○박형수 위원 위원장님, 불필요하다는 조항이 26페이지, 한병도 의원안 2호인가요?

○전문위원 최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 한병도 의원안 2호 결격사유에 일단 공무원은 결격사유인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는 제외한다’고 해서 해당 특별검사는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선관위특검법과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임명된 특별검사가 사건의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특별검사를 결격사유에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규택 위원 밑줄 친 부분은 빼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삭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자료 32쪽 33쪽, 새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데요. 증거자료, 수사자료지요. 수사자료 제출까지 법률에 명시한 건데 이것에 대해

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추가로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특검법의 입법례는 한병도 의원안이 중심이고요. 그에 더해서 유상범 의원안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이 추가된 것이고 김은혜 의원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추가된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는 이 부분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해서 확보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법률에다가 넣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승원 예, 토론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이게 특검법마다 이런 조항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관에 대한 수사 협조할 수 있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해 가지고 그에 응해서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하면 임의수사로 끝나는 거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압색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도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이런 데가 들어간 것은 과거에 우리가 특검을 했을 때 대통령실이나 경호처 이런 데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이것이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수사협조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병도 의원안에 있는 3항이 통상적인 다른 특검법에도 있는 정도의 수사협조 대상기관인 것 같은데 다른 사항은 중앙선관위라든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협조 요청대상에 그동안 넣을 필요도 없었고 안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나 각급 선관위에서 받아야 될 자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저는 한병도 의원안에 유상범 의원안에서 나오는 중앙선관위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포함시켜 가지고 굳이 압수수색영장을 안 받더라도 기관 간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자료는 특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대통령실하고, 지금은 청와대겠지요. 청와대하고 대통령경호처 같은 경우는 판단하실 문제이지는 하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혹여라도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을 피하려면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놓는 것이, 수사 협조는 임의수사기 때문에 그것을 넓게 포함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검법하고 다르게 이 선거 관련된 범죄는 특검이 해 본 적도 없는 종류의 사안들이고 아직까지 국민의힘에서 보기도 어떤 식의 부정이나 부실이 있었는지 도 대체 알 수가 없어요, 할 때마다 새로운 형태가 막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협조할 수 있는 기관은 가급적이면 넓게 잡아 주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안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압수수색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곽규택 위원님은 김은혜 의원안에 있는 기관, 유상범 의원안에 있는 기관을 다 합쳐서 그다음에 밑에 있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곽규택 위원 증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증거 부분은 너무 세세한 것 같긴 해요.

○소위원장 김승원 토론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상세하다고 하더라도 제일 끝에 가면 ‘그 밖의 증거 등’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시로 이렇게 열거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용민 위원 어차피 임의수사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증거에 대해서 예시하는 것은 조금 이례적인 입법례인 것 같고 이게 없더라도 충분히 다 요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관만 명확하게 특정해서 원활하게 하는 것으로 하면…… 유상범 의원안 정도로,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 정도만 포함시키는 것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규정으로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을 더 추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입법일 수도 있고 괜한 오해만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압축해서……

○박은정 위원 이것을 강제수사 안 하고 그냥 임의제출 받는다는 건가요, 이 조문이? 이것 가능한가요? 이게 전부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고 한 건데 이건 불가능해요. 이 법은 이렇게 규정할 수 없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냥 기관만 몇 군데 나열하는 정도로 가는 게 맞지요.

○박은정 위원 이걸 압수수색을 하거나 강제수사를 통해야 될 겁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게요. 이것을 임의수사를 통해서 받으면 그러면 그걸 믿고 더 이상 안 할 거냐, 그러지는 않겠지요. 필요하면 또 영장받아서 압수수색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상범 의원안에 따르면 자료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5쪽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수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민감 정보도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한 이 법 규정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는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한 규정일 수 있어서 수사의 원칙대로 강제수사에 따라서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김태규 위원 아니, 수사의 목적·범위 안에서 수사협조를 받는 것인데 그걸 대외적으로 공포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달리 쓰는 게 아니고……

○소위원장 김승원 속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켜시고……

○김태규 위원 수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걸…… 그리고 지금은 압수수색이나 아니면 임의수사나 강제수사나 그것은 수사의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될 수 있는 영역이고 이것은 지금 수사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어떤 행정적 제재를 가하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그것하고 강제수사하고 임의수사하고 반드시 연결시켜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아니라 개인정보는 수집 자체만으로 위법해요. 그래서 수사가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법원의 통제하에서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임의수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요

청을 하고 요청에 응해야 되는 이런 식의 방식은 위법수사를 전제로 한 문제가 있는 그런 방식이지요, 이 규정 자체가.

○**김용민 위원** 이게 사실 수사협조 의무규정에 들어간 것은 원래는 수사대상 기관이 들어간 게 아니고 수사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이나 참고할 자료들이 있는 행정청에 요청을 하는 방식인데 여기는 지금 수사대상을 집어 넣어 놓고 임의로 이런이런 자료 다 내놔라 하니까 이 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효과가 발생해 버리는 거지요.

○**박은정 위원** 그렇지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걸 수사대상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 차라리 협조 요청 정도로, 수사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이게 헌법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됐을 수 있으니까 수사협조 요청 정도로 가는, 그냥 대상기관에 넣는 정도 수준이 맞지 않을까. 만약에 그것도 사실은 어색하기는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되는 피의자성인데 피의자한테 이런이런 자료 다 내놔야 된다고 법에 기재를 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잘 안 맞지요, 사실은.

○**김태규 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지금 뭐냐면 수사는 기본적으로 자연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기관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수사대상인 피의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 자연인을 상대로 강제수사를 하고 임의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사협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해 달라는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왜 그게 충돌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다는 거지요.

○**김용민 위원** 아니, 기술적으로 보실 건 아니지요.

○**김태규 위원** 그건 기술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원칙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기관을 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관이 수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 문건을 내 줘야 되는 사람들이 다 수사대상자들이지요.

○**김태규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100%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기관에다가 자료를 내 달라는 것인데 피의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료를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합특검법에 자료요청해 가지고 국민의힘 무슨 의원, 무슨 의원, 무슨 의원, 무슨 의원은 자료, 이런이런 자료 다 내라 이렇게 써 놓은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곽규택 위원** 그것하고는 아니지, 그것하고는 다르고……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잖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존 입법례에 없는 거라 좀 신중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6항도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데 아까 전문위원도…… 누가 지적하셨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기존 특검법에 일단 없는 내용이고요. 6항은 앞에 있는 3항과 달리 인쇄업체라든가 운송업체 이러한 민간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어서 도입하는 여부

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6항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마찬가지로.

○법무부차관 이진수 소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한병도 의원님 안 제6항을 보면요 거기에서도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하고 있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른 법의 보호와 충돌될 경우에 해당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충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 부분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김태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방통위에 있을 때 내부 인사와 관련된 회의자료, 비공개로 된 자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들의 성명도 다 나오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다 나옵니다. 그것 강제로 끝까지 제출하라고 했던 게 민주당입니다. 그때는 괜찮고 지금 이것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민 위원 국회는 가능하지요. 국회법상 자료를 당연히 받아 볼 수 있지요. 앞으로 위원님도 하시면서 자료요구 한번 해 보십시오.

○김태규 위원 아니, 그게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것 가지고 수사협조, 수사하듯이 사실상 국회가 수사기관으로 변모가 됐었거든요.

○김용민 위원 아니, 나중에 위원님도 한번 자료제출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답답한지 아실 거예요.

○김태규 위원 아니, 그게 자료제출은 저희들은 다 했습니다. 하고 협조도 다 했는데 내부의 구체적인 회의록 내용까지 다 제출하라고 그러고 제출 안 하면 그것 가지고 형사 처벌하겠다고 덤벼드니 그게 제가 납득이 되겠습니까?

○김용민 위원 앞으로 위원님 자료제출 어떻게 하실지 좀 많이 궁금하기는 하네요.

○곽규택 위원 위원장님, 저 전문위원께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곽규택 위원님.

○곽규택 위원 다른 특검법에서도 이런 비슷한 조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나요? 어쨌나요, 과거에?

○전문위원 최기도 예, 반드시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지난번의, 과거의 특검법에서도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지금 다시 설명드리면 32쪽의 예를 들면 유상범 의원안의 3항에서 기존의 입법례랑 다른 것은 자료제출의 협조 요청 기관이 좀 많이 늘어난 것하고 그리고 자료제출 요청 목록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지 절차는 다른 기존 입법례하고 동일합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유상범 의원님 안이 아니라 한병도 의원님 안처럼 6항은 다른

특검법에 되어 있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잠깐만. 6항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박형수 위원 그래? 희안하네.

○박은정 위원 통상적으로 특검법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왔는데 지금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각급, 공수처라든가 대검 이런 데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료요청에 대해서 응할 수 있는데 지금 유상범 의원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특정해 놓은, 이렇게 대상 자료들을 특정한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러한 특검법 규정은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예시된 자료들이 대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통해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증거자료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이렇게 마치 반드시 기관이 응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수사의 기본적인 적법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보면 한병도 의원안은 대검, 공수처, 경찰청—수사기관이고요—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과 증거 어쨌건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적법하게 발부받아서 수입된 증거라든가 수사기록을 제출하라는 거고 그래서 거기다가 반드시 내라고 하는 의무조항이 붙은 건데 유상범 의원님 안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그러니까 수사대상인 기관이 있고요—그다음에 행안부, 지자체, 우정사업본부, 조달청 등 이런 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수사기록과 다른 걸 포함해서 이것을 반드시 내라고 하는 것이라서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박형수 위원 아니, 거기 보면 유상범 의원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7항에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건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든지 강제수사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체로는 큰 모순이 없어요.

그런데 한병도 의원안의 6항을 갖다가 지금 유상범 의원안이랑 섞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안은 분명히 달리 돼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네.

○김태규 위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피의자성이나 아니면 다른 압수수색의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 져야지만 압수수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수사로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기관을 수사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면 기관에 따라서는 굳이 수사대상이 아닌 기관들도 또 포함돼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수사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부서와 상관없는 부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서들에 일일이 그러면 사건과의 관련성도 모호하거나 아니면 필요는 하지만 꼭 강제수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다 압수수색 영장 받아 가지고 자료 확보하지 않는 한 자료 확보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는 결정적인 자료를 제대로 수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것은.

○소위원장 김승원 형사소송법 규정에도 이런 자료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공기관 간.

김한규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유상범 의원안은 이게 국정조사 수준의 자료요청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지 불확실할 때 국회에서 국민적인 의구심이 들 경우에 폭넓게 자료요청을 하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 폭넓게 하더라도 국회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선관위 특검이 뭘 할지 모르고 자료를 보고 범죄 혐의를 찾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영장을 받아서 자료요청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특별검사한테 국회하고 동일하게 폭넓게 권한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은혜 의원안처럼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를 집어 넣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마치 유상범 의원안하고 합치게 되면 이번에 수사대상이거나 뭔가 이 사안에 관련된 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병도 의원안, 백혜련 의원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2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수사인력도 많지 않고 이 사안이 꼭 공수처가 같이 수사해야 되는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판단을 하시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특검들도 법무부에서도 수사인력 파견을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본인의 희망하는 검사들이 없다고 해서, 희망을 받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부족되고 있는데도 안 보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공수처에서 실제로 2명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시게요?

○박형수 위원 아니요, 한말씀 드리려고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박형수 위원님.

○박형수 위원 지금 자료요청 대상기관과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고 생각도 해 보고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파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어디에서 누구를 파견받을지는 수사의 목적과 효율성에 따라서 특검이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여기에서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면 그것은 아마 아까 차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 특검 기간 내에 아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공소청의 검사가. 그렇게 되면 아마도 공수처에 있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가 특검법 할 때 공수처 검사들은 파견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하면서 특검법이나 공수처 소속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권도 아마 같이 연계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마 그런 보완조항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은정 위원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검사, 공소청에 있는 검사의 수사권 부분도 해결해 줘야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법무부차관이 문제제기하신 부분은.

○박형수 위원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공수처 검사의 수사 권한과 범위는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권한을 주종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차관이 제기한 그 문제제기는 현재의 법률을 특정을 해 갖고 이 ‘몇 호 법률의 검사의 권한에 준한다’ 이런 식으로 부칙조항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그것을 ‘공수처 검사를 의무적으로 파견받아야 된다’ 이걸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동안 특검법에서 공수처 검사 파견은 계속해서 했었던 규정이어 가지고 아마 들어간 것으로……

○김용민 위원 이걸 제가 특검법을 제일 많이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게 그동안에 검사 파견만 계속하다 보니까 특검 내에서 파견된 검사들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 대한 수사나 부적절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수처 검사를 반드시 파견 검사 내에 일정 부분을 확보하라는 차원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조항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보통 할 때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을 공수처 검사로 파견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처음에 논의됐다가 공수처 검사 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는 2명 이상 정도 파견받아라라고 이렇게 조금씩 낮춰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이 조항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원래 처음에 넣기 시작했던 게 그거여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 수사권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 수사권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봐서는 안 넣어도 된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 2명을 꼭 파견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사권과 관련해서 집어 넣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면 집어넣더라도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마무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아까 차관님 말씀 주신 것 중에 보면 포괄적인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내란 진상규명 특검법 보니까 마지막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호부터 10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이시지요? 추상적으로 보이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것은 1호부터 9호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성 있는 범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관련

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김태규 위원** ‘관련된 사건 일체’라고 다들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라는 표현이 좀 과격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건은 수사의 범위에 포함시킨다는 기본 취지는 똑같아 보이거든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런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해서……

○**김태규 위원** 국정조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 참정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지 그 이외의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법무부차관 이진수** 국정조사의 주제는 그와 같을 텐데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기타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을 거고 답변도 있었을 거고 사실확인 절차도 있었을 텐데요 이게 어느 범위까지 한정되는지가 좀 불분명한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태규 위원** 저는 전혀 불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조사에서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되었는데 뭐가 추상적이고 뭐가 범위가 너무 확대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논의하셔 가지고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는요 기본적으로는 자료 요청을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임의 제출을 해 주면 되지요. 되고, 그런데 지금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아마 강행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건에서는 빼자는 것도 균형은 안 맞아 보이고 그리고 자료 요청하면서까지 일일이 영장 받아 가지고 수사해라, 수사의 칼을 하나 빼 버리겠다라는 걸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남용해서 모든 자료들을 함부로 받아 가면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다면 자료 요청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검사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앞서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특별검사 자체가 수사권의,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보조기관이 되는 것인데 그걸 꼭 그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수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검법 자체가 법을 통해서 하나의 수사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이미 수사권을 만들어 냈는데 다른 일반 법에서 그 사람 수사권이 없어지니까 이게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해당 조항의 의문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으므로 당 내부적으로도 좀 더 논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지금 논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33쪽의 백혜련 의원안 4항입니다.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이라든가 사본제작 그리고 자료 제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인데 이 규정이 꼭 필요한 내용인지를 한번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희는 전례에 비추어서, 전례를 대부분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것은 큰 요구사항이 없는 한 그냥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러면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심사자료 36쪽 7조, 한병도 의원안 8항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지금 유상범 의원안과 한병도 의원안은, 제목은 유상범 의원안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관한 특별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공소유지 중인 사건뿐만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종합특검법이나 일부 개별 특검법에서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하는 규정은 두고 있어서 이와 유사한 사례인데 다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까지 이첩하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유상범 의원안 중에 제5항은 특별검사가 이첩을 받은 후에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방검찰청이나 경찰청이라든가 그 밖의 수사기관에 사건을 다시 재이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일반적으로 특검법에서는 수사기간 만료 후에 국가수사본부에 우선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과 약간 충돌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수사기관이 파편화되는 문제 그리고 특검이 수사 대상을 선별할 가능성도 고려해서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5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종합특검법안에도 논의 대상이 된 내용이었는데 5항은 그때도 채택이 안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위원장님, 그러면 그것 받아들이는 것으로, 수용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시는 걸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토론이 없다는 거지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특별검사의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전례와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이 있을까요?

전문위원님 한번……

○전문위원 최기도 44쪽에 보시면 특별검사보후보자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특별검사보후보자의 수 그리고 특별검사보 그다음에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파견공무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대상의 범위가 결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협상의 대상이 될 것도 같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그 부분이 결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절차라든가 일반 입법례가 잘 갖춰져 있어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사기간·재판기간도 특별한 논의는 없으실 것 같고, 아까 다시 말씀드린 특별검사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도 전례와 비슷할 것 같은데 특별히 지적할 것은 전문위원, 없으시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55쪽의 김은혜 의원안……

○소위원장 김승원 61쪽을 보고 있는데 55쪽…… 왜 자꾸 뒤로 가세요, 앞으로 가지?

○전문위원 최기도 못 따라가 가지고 죄송합니다.

55쪽의 다른 내용은 다 제정안이 동일한데 김은혜 의원안과 유상범 의원안에서 재판을 중계하는 경우 사생활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은혜 의원안에 최근 종합특검법 규정과 같은 게 있어서 포함해서도 무방하실 것 같은데 포함하시는 걸로……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혹시 토론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55쪽 6항에 대해서?

○곽규택 위원 포함시켜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자꾸 지금 논의하다 뒤로 돌아가서 좀 이상하기는 한데.

일단은 재판 중계를 넣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마 교섭단체 간에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집어넣는다면 이 6항은 지금 법원이 꼭 넣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차장님, 맞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러면 김은혜 의원안 정도로 들어가는 게 낫나요, 아니면 유상범 의원안 정도가 나은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저희는 유상범 의원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김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통상 있는 예외규정도 함께 포함됐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우리 기존에 처리했던 법 예가 있으니까 그 조항대로……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예, 단서규정이 하나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가장 최근에 도입된 종합특검법 규정은 김은혜 의원안 6항과 동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6항으로 해요. 유상범 의원안 6항하고 다른 점은 괄호 치고……

○전문위원 최기도 비식별조치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박형수 위원 비식별조치를 설명하는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데 있는 게 낫지요, 친절하게.

○박은정 위원 최근에 통과된 법안에 단서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최기도 김은혜 의원안과 동일합니다.

○박은정 위원 동일합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예.

○박형수 위원 김은혜 의원안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사생활도 그렇지만 국가기밀도 비식별조치를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게 통과가 됐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전 국민이 보는 재판에서 이게

다 공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국가기밀도.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용민 위원** 아니요, 그것은 재판장이 공개 안 할 수도 있고요, 국가기밀 이런 것들 일 때는.

○**김한규 위원** 어차피 재판 자체로 선고할 때 공개하지 않나요?

○**소위원장 김승원** 국가기밀을요?

○**김한규 위원** 중계를 하지는 않지만 판사가 선고할 때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잖아요. 필요하다면 국가기밀들은 제외하고 판결문을 쓰겠지.

○**소위원장 김승원** 아무튼 예전의 내란 관련된 재판을 보면 국가기밀과 관계 있다 그래서 중계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걸 다 가리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에 완전히 반대되는 조항이라……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는 4항의 중계를 불허할 사유를 헌법에 있는 걸 좀 나열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기존에 통과됐던 예를, 조문을 참고해서 정리하면 될 것이지 이게 지금 논쟁할 사안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내란특검법이나 이런 특검법들에서, 내란특검법이 아마 가장 그때 잘 만들어 놓은 법일 거고 토론을 해서 정리한 법이라 그것 정도로 참고하시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의 4항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형수 위원** 법원행정처장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에서 이걸 넣어야 된 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중계를 하게 되면 이것 넣어야 된 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중**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심리와 판결의 공개 부분에 관한 단서 말씀드리는 기회인 것이지요. 지금 2개가 같이 나열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헌법 109조에서 심리의 예외적 비공개를 정하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그 취지가 반영되었으면 한 다라는 게 일차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헌법 109조는 안전보장,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인데 기타 개인 정보라든가 예민한 부분들이 중계를 하다 보면 공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관해서도 면책규정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6항 관련 저희 행정처의 의견입니다.

○**박형수 위원** 거꾸로인 것 같은데. ‘비식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원래는 비식별조치를 해야 되는데……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

○**박형수 위원** 이 규정으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재판 중계를 한번 보시면…… 이것 옛날에 다 논의했던 것인데.

봐봐요. 재판 중계를 하면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신문할 때 그걸 다 비식별조치하라고 그러면 증인신문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오고 누가 뭐 했다가 계속 나오는데 그걸 다 비식별조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식별조치를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법원공무원한테 책임을 묻지는 말고 면책시켜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들어가는 게 맞고 필요한 얘기도 맞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런 경우에는, 국가기밀과 관련된 경우에는 중

계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의 규정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되는 데 이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서 국가기밀인 경우에도 중계를 허용하고 비식별조치를 안 해도 다 면책이 되니까 그냥 광범위하게 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기우종**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인의 증언.....

○**소위원장 김승원** 이 조항의 취지가 그렇게 지금 읽혀지잖아요. 6항에 들어감으로써 국가기밀과 개인적 사생활이라도 비식별조치를 안 해도 되고 면책도 되니까 법원에서는 과감하게 그냥 다 중계로 풀어 버린다는 얘기지요.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예외가 바뀌어진다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좀 이해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이게 선례가 있었습니까?

○**김용민 위원** 앞에 특검법에 이미 이렇게 했어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요. 앞에서 왜 그렇게 했냐고.

○**김용민 위원** 아니지요, 재판 공개를 당연히 하는 거니까 하는 거지.

○**김태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요.

○**김태규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것은 아무튼 문제점은 서로 논의가 됐으니까 나중에 다시 축조심 사할 때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드디어 보수·퇴직·해임·신분보장, 이것은 똑같은 거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최기도** 특별히 법안 간 차이는 없는데요. 61쪽 제일 아래에 백혜련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의 4항하고 유상범 의원안 4항이 문구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백혜련 의원안, 한병도 의원안 4항에 보면 특별검사 등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돼 있는데 유상범 의원안은 모든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라고 부가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어떤 의미로 하셨는지 잘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 내용을 추가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것도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가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일반 선례로 가지요. 일반 선례는 한병도 의원안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냥 단순히 공소를 제기하는 걸로.....

○**소위원장 김승원** 예.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63쪽입니다.

김은혜 의원안 16조(신분보장)에서 일반적인 규정에 더해서 특별검사 등에 대해서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 헌법재판소가 우선해 심판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2, 3항을 추가로 둘 것인지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63쪽 김은혜 의원안 16조 2, 3항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이런 부분까지 다.....

전례에 따라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박형수 위원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활동하는 기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특별검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청구가 됐는데 계속 해 가지고 수사기간 다 끝날 때까지 심판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 조항은 의미가 있는 조항인 것 같은데요.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탄핵의 목적인데 수사기간이 한정돼 있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심판을 하지 않아 버리면 탄핵의 의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속하게 심판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곽규택 위원 그리고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규정도 필요한 것 같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우선하여 심판은 현재에서 그렇게 당연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고 그다음에 탄핵심판 계속기간 동안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근데 과연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특검을 탄핵한다? 어느 당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박형수 위원 잘못하면 탄핵 해야지요.

○곽규택 위원 민주당이 워낙 특검 좋아하시니까, 탄핵 좋아하니까 탄핵 또 할까 봐 그런 거지.

○박형수 위원 우리는 정족수가 안 돼서 못하는 거지.

○곽규택 위원 뭘 못 하지.

○김용민 위원 위헌·위법하면 탄핵해야지.

○곽규택 위원 저거 봐 저렇게 또 한다니까.

○김용민 위원 집어넣어요, 그러면.

○곽규택 위원 집어넣읍시다.

○김용민 위원 이게 나중에 국힘한테 또 부메랑으로 돌아갈지도 몰라.

○소위원장 김승원 예, 집어넣으시지요.

자꾸 새로운 게 계속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위원 근데 잠시만요. 3항은 조금…… 만일에 탄핵심판청구가 되면 이게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돼 버리면 탄핵심판 할 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위원장 김승원 탄핵의 직무상 행위 때문에 특검 시작하자마자 탄핵을 당하면 한 달 동안 무슨 잘못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탄핵심판청구가 되면 직무정지 되잖아요.

○박은정 위원 직무가 정지되는데 굳이 그 기간을 수사기간에…… 그러면 수사를 안 하는 건가요?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수사가 중지되고 만약에 기간이 지나 버리면 특검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지.

○김용민 위원 검사보가 있잖아요.

○박은정 위원 특검보가 있는데, 대행도 있을 거고 그러면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건데 수사기간을 산입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또 늘어나는……

○김태규 위원 대행도 또 탄핵하자고 그럴 텐데……

○박은정 위원 그게 좀 이상한, 3항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저도 마찬가지……

○박은정 위원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김태규 위원** 3항을 빼 버리면 딱 원하는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김한규 위원** 우리가 뭘 원하는데요?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원하고 있습니까?

○**김태규 위원** 원하시지요. 잘 원하시지 않습니까?

○**곽규택 위원** 이게 지금 특별검사하고 특별검사보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신분보장에. 그러니까 만약에 상정하기 어렵긴 하지만……

○**김한규 위원** 김태규 위원님이 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니까 뺏시다.

○**곽규택 위원** 아니아니, 특별검사보……

○**김한규 위원**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저렇게 얘기를 하면.

○**박은정 위원** 아예 의미를 모르겠어서……

○**곽규택 위원** 이게 지금 둘 다 탄핵심판이 청구된 경우를 상정을 한다면 이게 직무정지가 돼 버리면 수사기간 도과해 버리면 특검이 그냥 끝나 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한 것 같아요.

○**박은정 위원** 아니, 특검보가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검보랑 특검을 전부 다 탄핵하는 경우를 상정을 하기 어렵고……

○**김용민 위원**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말씀대로 수사를 정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특검보가 있더라도. 그러면 그 사이에 증거가 사라져 버릴 수 있으니 오히려 안 좋은 것 같고 특검보가 대행으로 해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게 맞지요.

○**박은정 위원** 하게 만들어야지요.

○**박형수 위원** 아니지 아니지. 수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간이 있잖아요, 60일 90일. 그게 산입 안 되니까 더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지.

○**박은정 위원** 그렇게 늘어날 필요가 있냐고요.

○**김용민 위원** 그렇게 되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사실상.

○**박은정 위원** 늘어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를 못 하면 그 기간만큼은 보장을 해 줘야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김용민 위원** 수사기간이 확 늘어나 버리잖아요.

○**김태규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행은 현재 실무제요에 대행도 탄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은 실제 이진숙 위원장이 탄핵 당했을 때 저 탄핵하겠다고 하신 게 귀당이십니다.

○**박은정 위원** 그런데 그거는 논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이시고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특검이 한 명이고 특검보가 여러 명일 텐데 그 모두를 탄핵하지 않는 한 특검보의 대행에 따라서 수사는 진행이 돼야 되고 증거는 수집돼야 되고 수사는 완료돼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을 빼 버리면 수사가 무한정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원내하고도 상의하고 또 여야 간사님 계시니까 간사님께도 당에 의견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16조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의원안 16조 2항, 3항은 보류하겠습니다.

재판관할, 이의신청, 벌칙 및 부칙은 특별한 논의 사안은 없고요.

○전문위원 최기도 69쪽에 김은혜 의원안에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내용은 필요한지 여부를 좀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전례 없는 거는 그냥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생략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위원 최기도 이 조항 자체에 입법례는 있지만 이 입법 본조사에서는 그 특별검사가 쿠팡밖에 없어서 본 사건과 관련이 없어서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게 전문위원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하고요.

혹시 그러면 70쪽에도 유상범 의원님 안에 설명하실 게 있나요, 21조?

○김한규 위원 형소법 개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행 형소법 며칠자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검사의 권한과 동일하게 갖도록 한다든지 뭔가 특별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특검법예요? 특검법 부칙에……

○김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공수처 검사를 파견받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지금의 검사처럼 역할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승원 부칙에? 전문위원님 그거 좀 다음번 회의 때는 살펴봐 주시고요.

○전문위원 최기도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제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남았는데 70쪽 21조 부분은 저희가 논의할 게 있을까요?

○전문위원 최기도 70쪽에 다른 수사기관 등과의 관계는 지금 종합특검법에는 없고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규정만 있는데 검찰·경찰 이런 다른 수사기관까지 포함할지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1항은 협력 의무고요. 2항은 아까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기도 예, 앞에 7조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7조도 있고 협력 의무라 이거는 특별히 안 넣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박은정 위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21조는 반영 안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72, 73쪽은 나중에 간사 간 정리하도록 하고요. 74쪽, 75쪽…… 75쪽이 한병도 의원안 제5조 이거를 논의해 봐야 된다는 제안이었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러니까 나중에 법률 내용이 결정이 되면 체계자구 정리 과정에서 부칙은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75쪽 한병도 의원안 제5조는 부칙에서 정리된 안으로 다시 전문위원께서 제안 주면 그때 위원님들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박은정 위원 파견검사 규정도 여기다 넣으면 되겠는데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규정……

○소위원장 김승원 예, 국민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전문위원 최기도 저희가 아직 초안 단계이기는 한데 초안 마련된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하시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승원 예, 자료를 배부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소위원장 김승원 배부된 안은 예전에 전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세스는 예전에 있었지요?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추천위원회는 아니고 교섭단체가 대신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최기도 특별검사후보자국민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와 특이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일단 이 안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원회에 의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추천위원회는 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후보자를 받은 다음에 대통령한테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과 제4조(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 2개로 나눠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3조는 이에람 중사 특검 후보자 추천할 때 교섭단체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로부터 추천받아서 한 사례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제4조는 상설특검법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규정을 참고했습니다.

보시면 3조 1항은 국회의장은 법 시행 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역시 3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에 서면으로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합의하여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역시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4조(특별검사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 관련해서는 1항에서는 국회에 두도록 했고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했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일단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지만 6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은 교섭단체 합의 내용대로 교섭단체에서 각각 3명씩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원에 위촉하도록 했고 5항, 6항, 7항, 8항 등은 상설특검법에 있는 추천위원회 관련 규정과 동일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국회규칙의 운영 위 의결이라든가 본회의 의결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건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 관련 국회규칙입니다.

○**김용민 위원** 저 하나만 좀 말씀드려도……

○**소위원장 김승원** 예, 의견 주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양당 교섭단체가 큰 틀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크게 의견을 드릴 거는 없지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변협과 법전원협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다시 국민추천위원회를 열어서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는 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5일이면.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민 위원** 기존에 이런 방식이 아니었을 때는 5일 정도를 줘어도 가능할 수 있는데 회의체가 하나 만들어지고 또 추천을 요청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회의 다시 열어서 추천하는데 추리는데 5일은 사실은 굉장히 짧고 이 기간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변호사협회나 법전원에 추천 요구를 해서 며칠 만에 받고 그래서 며칠 만에 논의해서 결정하고 하는 이런 정도로 약간 더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이 기간 자체를 조금 더 넉넉하게 주거나 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저도 오히려 너무 짧아 보이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곽규택 위원** 처음에 국회의장 3일, 대통령 3일 이것을 이틀씩 줄이고 이걸 7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다 합치면 지금 14일이면 2주인데 그 2주를 넘기는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보여지고 앞에 3일, 3일은 사실 고문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기간이어서 이것을 이틀, 이틀로 하고 이것을 7일로 하고 이러면 어떨지.

○**김한규 위원** 저는 곽규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국회의장하고 대통령 기간은 되게 형식적인 거라 이렇게 길게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이 규정만 봐서는 변호사협회하고 법전원협의회에다가 며칠의 고민할 시간을 주는지가 안 들어 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가 합쳐서 5일인데 변협이나 법전원이 최소한한 3일 정도는 고민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고 참고로 이 법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시행된 것을 전제로 해서 여야 원내지도부에서는 미리 변협하고 법전원협의회에다가 이렇게 진행 중이니까 고민을 하시라고 전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변협하고 법전원협의회에게 2~3일 정도라도 보장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단계별로 기간을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한 쪽에 많이 써 버리면 다른 쪽에 몰릴 필요가 있어서……

○**김용민 위원** 보니까 기존에 변협 같은 데에도 공고 추천을 받더라고요, 회원들한테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추천받고……

○**김용민 위원** 그 기간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승원** 각 지역 변협 회장들로부터 그 지역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받고 그렇게 하던데요. 단계별로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 뒤가 7일이 되면 7일을 가지고 세 기관이 나뉘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간을.

○소위원장 김승원 7일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박형수 위원 7일보다 자꾸 더 늘어나면……

○소위원장 김승원 9일 정도는…… 3, 3, 3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규 위원 법전원하고 변호사협회에 동시에 보낼 것 아닙니까, 공문은?

○김한규 위원 맞습니다. 동시에 보내야지요.

○김태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박형수 위원 그렇지. 2, 2, 3 하든지…… 2, 2, 3 하면 일주일 되겠네요.

○소위원장 김승원 그런데 국민추천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아, 추천위원회가 추천을 하는 거지요?

○박형수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 달라고 변호사협회하고 법전원에다가 보내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굳이 하루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틀 해 주고 변호사협회하고 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것도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를 3일 주고 앞을 이틀씩 주고 그렇게……

○김용민 위원 앞이 아마 내부에서도 추천받는 절차를 거칠 거예요. 변협회장이 임의로 3명을 추천하기에는 어려울 거고……

○소위원장 김승원 그렇습니다. 예전의 전례를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김용민 위원 내부에서 다 회원들한테 추천을 또 받더라고요, 날짜를 정해 가지고.

○박형수 위원 그것은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통보할 때 이미 거기서 변호사협회나 법전원협의회도 그 절차를 밟으면 되지 어차피 이렇게 거쳐 갖고 올 거니까, 뻔히 올 거니까 미리 밟으면 되지.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의뢰하는 동시에 국민추천위원회는…… 안 받았는데 그냥 또 하기도 그렇네.

○김용민 위원 맞아요. 법상으로 뭐가 다…… 없는데 하기가 좀 그래요.

○박형수 위원 안 받았는데…… 받아야지 그다음에 공고를 또 하도록 되어 있네.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추천이 없으면 사실은 5일도 충분한데 추천절차가 가운데 끼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요.

○박은정 위원 저는 너무 빠듯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천위 구성을 하고 충분하게 그다음에 변협이나 법전원협의회에서 추천을 받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지 하루 주고 이래 가지고 급박하게 뭘 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통상적인 예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아마 또 추천위원 중에 대상후보자들과 여러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재첩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다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박은정 위원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사실상 본인 의사도 확인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법무부차관 이진수 소위원장님, 논의를 위해서 한 가지 고려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소위원장 김승원 예, 법무부차관님.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차관입니다.

변호사협회하고 법전원협의회에서, 이 같은 기관에서 각각 3명씩 추천을 받았을 때 다

시 국민추천위원회에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점검해야 되는 기간을 산정하심에 있어서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그러니까요. 조회하느라고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것은 2일, 5일, 3일은 최소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간사님 나중에……

○박형수 위원 나중에 좀 협의를 하실까요?

○소위원장 김승원 당내에서도 한번 의견을 주시고……

○김용민 위원 앞엿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박형수 위원 앞엿것을 일단 줄이고, 앞엿것 3일, 3일 돼 있는 국회의장, 대통령 이걸 2일로 줄이는 것은 일단 하기로 하고 그 뒤를 어떻게 할 건지를……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용민 위원 하고 여기 뒤를 충분하게 시간을 주지요, 이것은.

○소위원장 김승원 예,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한규 위원 간사 간에 조정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승원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간사 간에 조정한 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을까요?

○전문위원 최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까 광규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담을 것인지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규택 위원 법으로 가져오기에는 너무 조금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상설특검에서는 그냥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 추천위원회가 당연히 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했는데 여기 법에 규정하는 것에 국민추천위원회를 언제까지 구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필요 없을까요?

○전문위원 최기도 상설특검법에서는 구체적인 구성시기를 일단 규칙에 위임해 놓기는 했습니다.

○광규택 위원 그런데 규칙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언제까지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는데 아마 이건 상설특검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새로운 특검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라는 걸 우리가 새로 만드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만든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장이 처음에 대통령에게 통보하는 이틀, 대통령이 국민추천위원회에 통보하는 이틀 하면 4일 내에는 추천위원회가 구성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3일 내에는, 이 법 시행한다 그래도 3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최기도 추천위원회 구성시한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되는데요. 문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논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박형수 위원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이 아까 설명할 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 임명하는 조항을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논의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기도 예.

그런데 종합특검법이나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장자가 임용되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선관위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런 규정이 필요한지……

○박형수 위원 우리는 못 믿어.

○소위원장 김승원 한병도 의원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것은 제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집어넣으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것을 집어넣었을 때가 3대 특검법 때 넣었을 때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엄청 반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만들어 오셨어. 인정하신 거야.

○박형수 위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넣은 거예요.

○김용민 위원 그러니까 저도 넣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얘기 못 하게 넣어 버리지요, 그냥.

○소위원장 김승원 한병도 의원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 위원 윤석열 같은 줄 아시나 보네.

○김태규 위원 더 할 수도 있어요, 더 할 수도 있어.

○박은정 위원 특검을 임명을 안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특검을 안 한다는 생각을?

○박형수 위원 거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요.

○소위원장 김승원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특검도 임명 안 하고……

○곽규택 위원 빨리 끝냅시다!

○김용민 위원 그때는 검사가 수사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특검도 임명 안 할 거라고 생각했지.

○박은정 위원 다들 본인들 같은 줄 아나 보네.

○소위원장 김승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은 소위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진수 차관님, 기우종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곽규택 김남희 김승원 김용민 김태규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기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차관 이진수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중

임시회의록